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다목적용 CCTV 설치 사 업 명 성 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생년월일 (개인/단체) 의견 제출자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-1 전화번호 02-774-4551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 서울시 중구 별첨합니다 태평로2가 360-1

방범용 CCTV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3 년 4월 25일

제 출 자 진보네트워크센터



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

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합니다.

- 1. 본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, 이번 행정예고의 대상인 대한문 앞 CCTV 설치예정지에 매우 가까운 곳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CCTV 설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보주체인 소속 구성원들을 대표하여, 또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온 인권단체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.
- 2. 귀 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예고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조항들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라는 절차적 요건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, CCTV의 설치에 대한 의사 결정은 결국 의견수렴의 내용과 CCTV의 설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행정예고를하였다고 하여 CCTV의 설치와 운영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귀 청은 언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막론하고 설치를 강행하겠다며 이번 행정예고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¹⁾,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귀 구청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을 먼저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.
- 3. 또한 CCTV의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CCTV의 설치가 그 설치목적인 범죄예방, 시설 안전, 화재예방에 부합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CCTV를 통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무리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건대, 굳이 이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오히려 여러 정황상 이 CCTV는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, 이러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.
- 4. 또한 만약 이 CCTV의 설치가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설치에 대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.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문 앞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이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, 이 분향소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. 만약 이 CCTV가 적법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. 집회시위의 권리와 CCTV 설치의 관계 문제에 있어, 전문가들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?). 미국 워싱턴 D.C. 콜럼비아 특별구 경찰의 CCTV 사용에 관한 자치령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5. 결론적으로 본 단체는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. <끝>

¹⁾ 데일리안 2013. 4. 23일자. "중구청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. 관계자는 "시위대가 CCTV설치를 반대했는 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"이라며 "반대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했고 이제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"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."

²⁾ 정태호. 2008.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. 「헌법학연구」, 14(1).